

검증기관의 지정기준(제26조제2항 관련)

구분	지정기준
1. 인력 및 기술능력	별표 1 제1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
2. 재정능력	별표 1 제2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
3. 시설 및 장비	가.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는 것 1)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·판단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가) 이상행위정보를 수신·저장할 수 있는 설비 나) 이상행위정보 유무를 분석·검증·판단할 수 있는 설비 다) 이상행위정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 2)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3)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.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